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197
------	------

2023. 9.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1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9.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홍보기획관 최원석)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 (2015.12.15.).

-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나. 위치 : 성북구 길음로7길 20,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다. 규모 : 지상 1~3층(연면적 2,925.23㎡, 전용 1,791.1㎡)

라. 사업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방송통신위원회 출연기관)

마. 주요시설 : 디지털교육실, 장애인방송제작실, 편집실, 사무실 등

바. 주요사업

- 미디어 교육 지원 :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교육 등
-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
-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 지원 등

사. 출연금액(안) : 294,020천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총운영비(1,470,100천원)의 20% 분담
인건비 85,460천원, 경상비 208,560천원(※ 사업비 제외)

아.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의 운영비 지원 필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제4조(운영비 분담)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 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분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2024년도 서울시 세출예산안에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음.

나. 출연의 규모

- 출연의 규모는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4자 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2015.12.)에 따라 서울센터 총운영비 14억 7천만원의 20%인 2억 9천 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백만원(△0.6%) 감액되었음.

제4조(운영비 부담)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부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¹⁾는 2020년 11월부터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지상 1~3층(연면적 2,925.23㎡)을 사용하고 있으며, 성북 노블레스 빌딩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이전 대비 전용면적, 시설, 인력 등이 확대되면서 운영비가 크게 증가하였음.

1)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출연기관으로서 현재 부산, 세종,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경기, 충북 등 10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운영비는 각 협약상 부담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현황 >

(단위 : 천원)

연 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안)
총운영비	843,500	1,452,300	1,428,300	1,479,700	1,470,100
서울시출연금	159,388	286,689	285,660	295,940	294,020
출연금증감액	71,650 (81.7%)	127,301 (79.9%)	△1,029 (△0.4%)	10,280 (3.6%)	△1,920 (△0.6%)
비 고	센터 이전 (2020.11.)	미디어문화마루 개관(2021.5.)			

다. 출연의 타당성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서울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미디어를 바로 알고 방송, 영상, 인터넷 등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미디어 기반시설로, 2015년 6월 임시센터로 개관하여 서울 지역의 미디어교육, 장비대여, 시설대관, 제작지원 등을 사업영역으로 해 왔음.
- 또한 서울시는 시민들의 미디어복지 향상과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2017년부터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음.
- 최근 5년 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43,733명에서 2022년도 115,888명으로 증가하는 등 수치적인 측면에서 단순 이용자 수는 증가되었으나 ▶ 학교 미디어 교육 이용자 수 ▶ 사회 미디어 교육 이용자 수 ▶ 미디어 교육 지원 학교 수 등 실질적인 실적은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움.

< 최근 5년 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용자 수	42,954	49,396	87,786	110,418	115,888
학교 미디어 교육 이용자 수	13,059	12,385	57,758	29,727	26,283
사회 미디어 교육 이용자 수	8,967	11,538	10,864	17,652	35,390
미디어 체험 인원 수	953	2,065	5,443	3,539	4,785
미디어 교육 지원 학교 수	29개	34개	29개	34개	24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방송사/분량	10개/2,104분	10개/3,448분	15개/3,907분	10개/4,383분	436건*

* 2022년도부터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건수로 실적 지표 변경

- 서울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업무협약의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가 미디어와 시민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시됨.

- 따라서 협약 체결일로부터 기간의 제약 없이 지원할 수 없으며, 합의에 의해 협약 종료가능하므로 향후 지속 여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센터가 위치한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에는 금년도 1분기까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인 미디어 랩²⁾과 마을미디어지원센터³⁾ 등 2개 사업이 유치·운영되어 미디어 관련 사업의 집적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서울시는 타 기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사유로 각각 3월과 4월에 2개 사업을 모두 종료시킨 바 있음.

2) 미디어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가 민간위탁 받아 운영하였음. (2020.4.~2023.3.)

3) 자기 마을을 소재로 콘텐츠를 제작·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가 민간위탁 받아 운영하였음.(2020.4.10.~2023.4.9.)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하여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필요한 경우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하고 미디어에 관한 교육,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등 방송법 제90조의2 제4항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센터를 운영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적정공간을 제공하고, 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해 협조·지원한다.
3. 재단은 센터가 서울 전역의 시청자미디어지원 관련 사업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력한다.

제3조(설립공간) 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86-8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내에 설립한다.

제4조(운영비 분담)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분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② 운영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상호 사전 협의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 관리·운영을 재단에 위탁하며,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재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발전협의회 구성) ① 센터 운영에 대한 지역 참여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센터 발전협의회를 둔다.

② 발전협의회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기관, 미디어 관련 학계·단체·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추천 및 의견을 반영한다.

③ 발전협의회는 센터의 사업·정책·예산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재단의 정관 등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7조(분쟁해결) 본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이의나 분쟁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의 관할은 센터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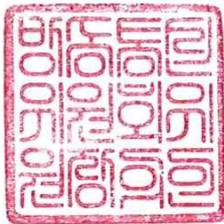
제8조(협약서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4부 작성하여 당사자 별로 아래에 직인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1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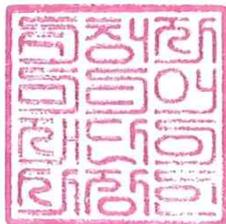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 1부 시장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성북구청장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197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15.12.15.)
- 나.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명: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 나. 위치: 성북구 길음로7길 20,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 다. 규모: 지상 1~3층(연면적 2,925.23㎡, 전용 1,791.1㎡)
- 라. 사업주체: 시청자미디어재단(방송통신위원회 출연기관)
- 마. 주요시설: 디지털교육실, 장애인방송제작실, 편집실, 사무실 등
- 바. 주요사업
- 미디어 교육 지원: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교육 등
 -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
 -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 지원 등

사. 출연금액(안): 294,020천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총운영비(1,470,100천원)의 20% 분담 (인건비 85,460천원, 경상비 208,560천원) ※ 사업비 제외

아.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의 운영비 지원 필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제4조(운영비 분담)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분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방송법」 제90조의2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2024 회계연도 예산편성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이지아 주무관(☎2133-6440)